

2023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학적변동 안내

■ **학적변동 기간: 2023년 8월 1일(화) 09:00 - 8월 25일(목) 16:00까지**

■ **학적변동신청은 반드시 해당기간 안에 신청완료 해야 함(기한 엄수)**

※ 해당 신청기간 이외 신청 절대 불가

■ **자세한 내용은 아래 학적변동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.**

※학적변동 신청기간은 항목별로 마감일이 다를 수 있음에 유의

방법	학적변동	학적변동기간	내용
본교 포털 신청 가능 항목	휴학 및 복학	8월 1일(화) - 25일(금) 16시까지	- 포털시스템(KUPID) → 학적/졸업 → 학적사항 → 휴·복학 신청(대학원) - 임신·출산·육아휴학, 군입대 휴학, 창업휴학 등의 경우 증빙서류 필수 - 신입생 첫학기 휴학 불가 (단, 임신·출산·육아휴학, 군입대 휴학은 가능)
	지도교수 변경	16시까지	- 포털시스템(KUPID) → 학적/졸업 → 학적사항 → 지도교수 변경신청 *지도교수 변경은 학적변동 기간에 신청
	석·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자 처리		- 포털시스템(KUPID) → 학적/졸업 → 학적사항 → 석·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 신청 - 수료이후 석·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 불가
	신입생 지도교수 신청	9월 1일(금) - 8일(금) 16시까지	- 포털시스템(KUPID) → 학적/졸업 → 학적사항 → 지도교수 신청 - 지도교수 미신청시 '연구지도' 이수 불가
소속 학과 행정실로 원서 제출	자퇴 및 재입학	* 재입학 신청기간 : 7월 17일(월) - 7월 28일(금) 16시까지	- 자퇴원서(양식), 재입학원서(양식)에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의 날인을 받은 후 대학(학과)행정실로 방문 제출(인터넷신청 불가) - 재입학 허가받은 학생은 정규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반드시 납부
	전공변경	8월 1일(화) - 25일(금) 16시까지	- 전공변경허가원(양식) 작성 후 대학행정실(학과)로 방문 제출 - 수료사정 개시 및 수료 이후 전공변경 불가 - 2023학년도 2학기가 수료예정 학기인 학생의 경우, 반드시 본 학적변동 기간에 전공변경을 신청하여야 함
	석·박사통합과정 [수료생]의 석사학위 취득 신청	7월 24일(월) - 8월 2일(월) 16시까지	- 석사학위취득신청원 작성 후 대학행정실(학과)로 방문 제출 - 합격자는 개별통보 예정

■ 일반대학원 수료학점 및 재학연한

■ 수료학점 ※ 대학원 과정별 수료 학점 외 수료에 필요한 학과내규 충족 필요			
과정	교과학점	연구지도	비고
석사	24	8	2020학년도 2학기 입학생까지
박사	36	8	
석·박사통합	54	16(12)	
석사	24	8	2021학년도 1학기 입학생부터
박사	30	8	
석·박사통합	48	16(12)	

() : 수업연한을 단축할 경우

■ 재학연한				
<단위 : 년>	수업연한	휴학기간	재학연한	비고
석사	2	2	6	2020학년도 2학기 입학생까지
박사	2	3	10	
석·박사통합	4(3)	3	12	
석사	2	2	4	2021학년도 1학기 입학생부터
박사	2	3	8	
석·박사통합	4(3)	3	10	

() : 수업연한을 단축할 경우

■ 2023학년도 2학기 학적변동 관련 주요 변경사항 안내

구분	관련 시행세칙	내용	비고
임신·출산·육아 휴학	제16조의2 / 제16조의3	▶ 자녀 1명당 최대 2년 휴학 가능 ▶ 학기중 중도휴학 가능	특별휴학 (휴학 및 재학연한 미산입)
군제대 복학	제18조③	▶ 군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군복무 휴학자가 복학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- 복학원서 - 소속 부대장 또는 기관장의 수학 승인서 - 병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- 서약서(군복무 휴학 추가 사용 금지)	해당 복학은 중간고사 개시일 전까지 가능 (최종등록기간 내 등록완료 해야 함)

I. 휴학 및 복학

※ 신입생의 경우, 첫학기 휴학 불가(단, 임신·출산·육아휴학, 군입대휴학은 가능)

1. 신청기간: **2023년 8월 1일(화) - 25일(금) 16:00까지** (학적변동기간과 동일)

*학적변동기간에 인터넷으로 휴·복학 신청한 경우, 학적변동 반영시기는 2023년 9월 1일에 변동됨

2. 신청방법: KUPID(<http://portal.korea.ac.kr>) → 학적/졸업 → 학적사항 → 휴·복학 신청(대학원)

3. 휴학 종류

휴학 종류	신청가능 학기단위	재학연한 포함여부	휴학기간 포함여부	증빙서류	비고
군휴학	6학기	X	X	입영통지서 혹은 복무확인서	-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
임신·출산· 육아휴학	1학기~ 2학기	X	X	임신·출산: 임신진단서 (45일 이내 발급분) 혹은 출산증명서 (45일 이내 발급분) 육아: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주민등록등본	-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-임신·출산 사유로는 남학생 신청 불가 -(자녀 1명당) 임신·출산·육아휴학 최장 2년
창업휴학	1학기	X	X	-창업 휴학 심의신청서 [별첨1] -사업자등록증 (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필수 제출) -사업계획서[별첨2] -창업유관부서 추천서 [별첨3-1] 또는 지도교수 추천서 [별첨3-2/*필수] -창업유관부서 창업특강 이수증 -기타 창업활동 증빙자료	-최소 2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신청 가능 -인터넷 신청불가(학과행정실 서류접수) -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-최장 2년 휴학 가능(한 번에 2년 신청 불가, 학기마다 승인받아야 함) -신청자격, 제출서류, [별첨]서식 : KUPID → (좌측)빠른서비스 → 규정/학칙 → 「창업휴학운영지침」 4조, 7조 등 참조 -대학행정실에서 공문발송 :결재선에 창업교육팀 협조 수신부서 <u>대학원행정팀</u>
기관근무 및 연수휴학	1학기~ 2학기	X	X	- 재직/연수증명서 - 학과관리위원회 회의록 - 학과내규	-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-인터넷 신청불가(학과행정실 서류접수) -최장 2년 휴학 가능(한 번에 2년 신청 불가) -재직/연수증명서: 기관명, 소속부서, 직위, 재직/연수기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-대학행정실에서 대학원행정팀으로 공문

휴학 종류	신청가능 학기단위	재학연한 포함여부	휴학기간 포함여부	증빙서류	비고
					발송(학과내규 첨부) -학과 내규로 정해진 학과에 한하여 교육과정과 관련된 교외 기관근무 및 연수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학과의 심의를 거쳐 일반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
고시합격자 연수휴학	1학기	○	X	고시합격 및 연수교육 증빙서류	-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-인터넷 신청불가(학과행정실 서류접수) -연수원 교육기간 만큼 휴학 가능
일반휴학	1학기~ 2학기	○	○	없음	

*증빙서류: 본인 신분확인 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또는 마스킹 처리

가. 군입대휴학

- 군입대휴학 학기는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되며, 입영취소나 연기 등으로 군입대사유가 소멸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신고하여 군입대휴학을 철회하여야 함
- 구비서류: (입대일 기재된)입영통지서사본 or 복무확인서 or 병적증명서 중 1부
(병무청 발송 E-mail 포함)

나. 임신·출산·육아휴학

- '임신진단서(45일 이내 발급분)'나 '출산증명서(45일 이내 발급분)'를 첨부하여 신청함
- 육아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 '가족관계증명서'나 '주민등록등본'을 첨부하여 신청함
- 자녀1명당 최장 2년까지 휴학이 가능하며, 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됨

다. 창업휴학

- 제출자격 : 2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
*「창업휴학운영지침」 제4조(창업 휴학 신청자격)의 신청자격을 갖춘 자는 제7조(창업 휴학 제출서류) 제출서류 구비
- 구비서류 : 창업 휴학 심의신청서[별첨1], 사업자등록증(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필수 제출), 사업계획서[별첨2], 창업유관부서 추천서[별첨3-1] 또는 지도교수 추천서[별첨3-2/*필수], 창업유관부서 창업특강 이수증, 기타 창업활동 증빙자료
*별첨 서식: KUPID → (좌측)빠른서비스 → 규정/학칙 → 「창업휴학운영지침」 참조
- 최장 2년 휴학 가능(한 번에 2년 신청 불가, 학기마다 승인 받아야 함)하며, 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됨

라. 기관근무 및 연수휴학

- 구비서류 : 기관명, 소속부서, 직위, 재직/연수기간 확인할 수 있는 재직/연수증명서
- 학과 내규로 정해진 학과에 한하여, 교육과정과 관련된 교외 기관근무 및 연수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학과의 심의를 거쳐 일반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
- 최장 2년 휴학 가능(한 번에 2년 신청 불가)하며, 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됨

마. 일반휴학

- 석사2년, 박사(석·박사통합) 3년까지 가능하며, 6개월(1개 학기) 또는 1년 단위(2개 학기)로 연속하여 연장 가능
- 기 신청기간 종료 후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다시 휴학 신청하여야 함
- 학위청구논문심사를 받고자 하는 학기에는 반드시 복학 신청하여야 함
- 수료생 : 미등록해도 제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휴학이 의미 없으므로 (일반)휴학신청 하지 않아도 됨

다만, 임신·출산·육아휴학, 군입대 휴학, 창업휴학, 기관근무및연수휴학과 같이 논문제출 연한에서 제외되는 휴학은 유의미하므로 휴학 신청을 해야함

4. 복학 종류

복학 종류	증빙서류	비고
군제대복학	(제대일이 기재된) 전역증 사본 혹은 병적증명서 1부	- 제대일로부터 1년 안에 복학하여야 함 (예시) 2021년 4월 30일 전역자는 2021년 8월과 2022년 2월 두 번의 복학기회가 있음. 2022년 8월 복학하려 할 경우 전역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어 휴학경과 제적됨. 단, 2022년 2월까지 복학할 수 없을 경우, 필히 2022년 2월에는 일반 휴학(전역증 사본이 필요함)원을 제출하여야 함 - 군필자 복학생은 예비군 전입신고를 「KUPID(http://portal.korea.ac.kr) / 정보생활 / 예비군 전입신고」에서 필히 신청 * 증빙서류 :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또는 마스킹 처리 - 군제대 복학자는 중간고사 개시일 전까지 복학 가능 - 복학예정자는 반드시 최종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
일반복학	없음	- 내국인
	'여권' 사본 1부	- 외국인학생 : 복학 신청시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- 외국인 [복학] 신청 : 1월, 7월부터 인터넷 신청 - 지도교수 : 1월, 7월에 신청한 '외국인' 휴/복학 신청자 및 학적변동기간(2월, 8월)에 휴/복학 신청자(내/외국인) 승인처리 *지도교수 승인 후 글로벌서비스센터에서 비자 업무 진행됨

5. 휴/복학예정 확인서 발급

- 발급 기간: 8월 4일(금) ~ 8월 25일(금) 16:00까지
- 학적변동기간에 인터넷 휴/복학 신청한 학생은 지도교수가 휴/복학 승인처리 후 학적변동기간 중에 KUPID → [제증명]에서 '휴/복학예정 확인서' 발급 가능(예정)
- 학기개시일(3월 1일, 9월 1일) 이후 학적변동 최종 승인처리가 되면 '휴/복학증명서' 출력 가능

II. 자퇴 및 재입학 신청

1. 자퇴

- 자퇴원서에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의 날인을 받은 후 대학행정실(학과)로 방문 제출(인터넷신청 불가)
- *2023년 9월 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2023년 9월 28일(목)부터 공휴일 시작이므로 반드시 9월 27일(수) 16시까지 대학행정실에 자퇴원서 제출해야 함
- *자퇴일: 자퇴원서 소속학과행정실 제출일

2. 재입학

- 신청기간 : 7월 17일(월) - 7월 28일(금) 16:00 *해당 신청기간 외 재입학 신청 절대 불가
- 재입학원서 소속학과행정실 제출(인터넷신청 불가)
- 자퇴, 미등록, 휴학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제적된 자를 대상으로 당해연도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허가 함
- 재입학자의 재학연한은 최초 입학일로부터 학위청구논문제출연한(석사: 6년, 박사: 10년, 통합: 12년)으로 함
- * 2020년 2학기 입학생까지 학위청구논문제출연한 : 석사 6년, 박사 10년, 통합 12년
- 재학연한 내 수료가 가능할 시에만 재입학 가능함
- 휴학기간은 재입학 전 휴학기간을 합산함
- 재입학 허가받은 학생은 정규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해야함
- 정규 등록기간 : 8월 22일(화) 09:00 ~ 8월 29일(화) 16:00 (반드시 본교 홈페이지 및 포털을 통해 정규 등록기간 확인)

III. 재학생 지도교수 변경

1. 신청기간 : 8월 1일(화) - 8월 25일(금) 16:00까지 (학적변동기간과 동일)
2. KUPID(<http://portal.korea.ac.kr>) → 학적/졸업 → 학적사항 → 지도교수 변경신청
3. 지도교수 변경은 학적변동기간에 신청해야 함(학적변동기간 외 신청 불가)
4. 학·연·산협동과정생 중 공동지도교수가 변경된 경우, 학적변동기간에 공동지도교수 변경신청을 해야 함 (지도교수2 포함 공동지도교수 변경은 서면으로 지도교수변경원을 대학행정실에 제출)

IV. 전공 변경

1. 신청기간 : 8월 1일(화) - 8월 25일(금) 16:00까지 (학적변동기간과 동일)
2. 전공변경허가원(양식)을 작성하여 대학행정실(학과)로 제출
3. 수료 이후 전공변경 절대 불가
- (2023학년도 2학기가 수료예정 학기인 학생의 경우, 반드시 본 학적변동 기간에 전공변경을 하여야 함.)
4. 학적변동기간에 전공변경 신청해야함(학적변동기간 외 신청 불가)

V. 신입생 지도교수 신청

1. 신청기간: 9월 1일(금) - 8일(금) 16:00
2. KUPID(<http://portal.korea.ac.kr>) → 학적/졸업 → 학적사항 → 지도교수 신청
3. 지도교수 미신청시 '연구지도' 이수 불가
- * 지도교수 미신청으로 인한 '연구지도' 미이수시 정규학기 내에 수료할 수 없음

VI. 석·박사통합과정 수료생의 석사학위 취득 신청

1. 신청기간 : 7월 24일(월) - 8월 2일(수) 16:00 ***해당 신청 기간 외 신청불가**
2. 방법 : 석사학위취득신청원 작성 후 대학행정실(학과)로 방문 제출(인터넷 신청 불가)
3. 대상
 - 석·박사통합과정 수료자 중 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에서 규정하는 석사학위 수료요건을 충족한 자
 - 석·박사통합과정 재학연한 12년(10년)이 경과하지 않은 수료생
 - * 재학연한 12년(10년) : 2020년 2학기 입학생까지(재학연한 10년의 경우, 2021년 1학기 입학생부터)
4. 석사학위 논문제출
 - 개별통보 받은 합격자
 -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및 학과내규로 정하는 석사학위 취득요건(외국어시험, 종합시험 등)을 충족한 수료생
 - 석·박사통합과정 수료 후 석사학위취득자는 추후 해당 통합과정 박사학위 취득이 불가함

학위과정	석·박사통합과정
취득학위	석사
제증명 발급	석사 학위 / 석·박사통합과정 수료

VII. 등록금 납부

※ KUPID 학사일정 → [재무부]2023학년도 등록금 일정안내 참조)

1. 정규 등록 기간 : 8월 22일(화) 09:00 - 8월 29일(화) 16:00
 - KUPID → 등록/장학 → 등록금고지서 → 고지서 출력하여 지정 은행에 납부
2. 최종 등록 기간 : 9월 11일(월) - 9월 13(수) 16:00
※ 등록기간 엄수(등록기간 외 등록 불가함)
3. 수료생 : '수료연구생의 등록'관련 자세한 사항은 일반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별도 확인
 *수료연구등록금 미납부 시 해당년도/학기에 블랙보드, 도서관 등 이용 불가함

2023. 7.

대학원행정팀